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4. 11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基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6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세특례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감면 관련 근거조항 등을 개정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 정비 (안 제5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한 감면사항 추가

나. 감면률 적용시한 연장 (안 부칙 제2조)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 2012.12.31 ➡ 2014.12.31

○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2013.12.31 ➡ 2014.12.31

다.「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안 제6조, 제15조,제16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및「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구세감면 규모의 변동없이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에서 위임한 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조정하였으며,
- 안 부칙 제2조에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 안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부가가치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종교단체의 의료기관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참고로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우리구의 2013년도 기준 재산세 감면금액은 총 2억 198만 5천원으로, 이중 종교단체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실적은 없으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4건에 2억 156만 4천원으로 조사되었음.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재산세 감면현황(2013년도 기준)]

조 문	감면대상	감 면 현 황		비 고
		건수	금액(천원)	
	합 계	**5**	**201,985**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	-	
제4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1	421	사러가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제6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제7조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	
제8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9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	-	
제10조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4	201,564	

참 고 자 료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

까지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